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환경부 (대기관리과)
연 월 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대기배출시설 편입에 따른 허가(신고) 기간의 조정 및 법률용어 정비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대기배출시설에 편입(19.5.2 개정)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등에 대한 허가(신고)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까지로 조정(별표 3 제2호다목)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화학용어 KS 기준(대한화학회 유기화합물 명명법 기준)으로 대기오염물질명 수정(별표 1 제50호 및 제61호 등)

※ 아세트알데히드 → 아세트알데하이드, 히드라진 → 하이드라진

다.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('20.5.26.) 개정사항 반영(제67조의2제2항 등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○○○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의2제2항 중 “부착할”을 “붙일”로 한다.

제71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포함하여야”를 “포함해야”로 하고,
같은 항 제2호 중 “당해년도”를 “해당년도”로 한다.

제86조의2제2항 단서 중 “경과한”을 “지난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39호, 제50호 및 제6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9. 불소화합물

50. 아세트알데하이드

61. 하이드라진

별표 1의2 제10호, 제23호 및 제3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0. 불소화합물

23. 아세트알데하이드

35. 하이드라진

별표 2 제10호, 제23호 및 제3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0. 불소화합물

23. 아세트알데하이드

35. 하이드라진

별표 3 제2호다목 본문 중 “2020년 12월 31일”을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호 같은 목 단서 중 “다만, 흡수식 냉·온수기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다만”으로 한다.

별표 8 제2호가목1) 질소산화물란 2)다)(6)(가) 중 “2001년 6월 30일 이후”를 “2001년 6월 30일 이전”으로 한다.

별표 8 제2호가목1) 표의 아크릴로니트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아크릴로니트릴 (ppm)	모든 배출시설(저장시설 제외)	3 이하
	저장시설	20 이하

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5 차목2) 중 “9호기”를 “제10호기”로, “제2호기”를 “4호기” 하고, 같은 호 같은 목 3) “10호기”를 “9호기”로, “4호기”를 “2호기”로 하며, 같은 호 타목 중 “6)가)”를 “7)가)”로 하고, 같은 호 파목 3) 중 “2021년 1월 31일”을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18의2 제2호 비고 제1호 및 제3호 비고 중 “부착하고”를 각각 “붙이고”로 하고, “부착한다”를 각각 “붙인다”로 한다.

별표 36 제2호마목10)중 “수수하거나”를 “수수(授受)하거나”로 하고, 같은 호 차목중 “응하지 아니한”을 “따르지 않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5호의2서식 뒤쪽 중 “당해년도”를 각각 “해당년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7조의2(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해당 자동차의 원동기를 정비할 때에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. 다만, 이륜자동차와 대형·초대형 승용·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다.	제67조의2(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붙일</u> -----.
제71조의3(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) ①·② (생략) ③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(생략) 2. 당해연도 초과분 발생사유 3. (생략) ④·⑤ (생략)	제71조의3(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포함돼야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해당연도</u>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86조의2(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) ① (생략)	제86조의2(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(제87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. 이하 "검사유효기간"이라 한다) 만료일(제86조의5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)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, 이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(이 경우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)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로 한다.

②

.

지난

.

--	--	--